

회의자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4차 회의

2005. 10. 19. [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업무전략기획팀 4차 회의

1. 회의 일시 : 2005. 10. 19. 09:30 ~

2. 회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회의실

3. 참석 대상

- 팀장 : 박찬운 정책국장
- 외부위원(5명) : 김종서, 조효제, 장주영, 이창수, 배경내 위원
- 내부팀원(4명) : 심상돈 과장, 사무관 이수연, 강명숙, 임송(간사)

4. 회의 안건

- 업무전략기획팀 초안(위원회 작성 초안+내부팀 초안) 검토
- 기타 논의사항(워크샵 개최에 대한 건, 차기 회의 일정 등)

안건1 : 팀 초안 검토

1. 팀 초안 작성 방법

1. 김종서 위원(안)을 기초로 내부팀 초안 및 타 위원 작성 내용을 통합

2. 이창수 위원(안)

1.1. ⇒ 2.4., 1.2., 1.3. ⇒ 1.3., 1.4. ⇒ 2.4., 2.6,

1.5. ⇒ 2.2., 1.6. ⇒ 1.4., 1.7. ⇒ 3.3.

2.1., 2.2. ⇒ action plan에서 고려, 2.3. ⇒ 1.4., 2.4., 2.5. ⇒ 3.1.

2.7. ??

3.1., 3.2. ⇒ 1.6., 4.1., 4.2., 4.3., 4.4. ⇒ 1.3.

3. 장주영 위원(안)

1.1. ⇒ 1.2., 1.2. ⇒ 2.4., 1.3. ⇒ 3.1., 3.3.

2.1. ⇒ 2.1., 2.2. ⇒ 2.4., 2.3. ⇒ 3.1., 3.3.

3.1. ⇒ 1.4., 3.2. ⇒ 1.4., 2.4., 3.3. ⇒ 3.1., 3.4.

4.1. ⇒ 2.5., 4.2. ⇒ 2.2.

4. 배경내 위원(안)

1.1. ⇒ 1.2., 1.2. ⇒ 1.5.(신설), 1.3. ⇒ 1.3. ??

2.1., 2.2., 2.3. ⇒ 1.4.

3.1. ⇒ 2.3.(신설), 3.2. ⇒ 2.6.(신설), 3.3. ⇒ 3.1., 1.5., 1.6.

3.4. ⇒ 2.4., 3.5., 3.6. ⇒ 2.6.(신설), 3.7. ⇒ 1.3.

4.1., 4.2., 4.3., 4.4. ⇒ 1.3.

5. 조효제 위원(안)

향후 vision, mission 논의에 반영

법적-정치적-제도적 환경구축 ⇒ 1.3., 취약계층 발굴·대편 ⇒ 1.2.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 1.1., 2.3.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영향력 제고 ⇒ 1.1., 1.3., 3.1. 등

안건2 : 기타 사항(워크샵 개최 건 등) 논의

| 구 분 | 팀 초안 | | |
|------------|--|--|--|
| Vision | | | |
| Mission | | | |
| Goal | 1.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제수준의 인권 인프라 구축 2.인권·민족도 극대화를 위한 조사·구제 기반 확립 3.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인권교육 체계 확립 | | |
| Objectives | <p>1.1.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1.2.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구축 *주요재판과 입법과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포함 1.3.국제인권 기구 및 국내외 정부·비정부 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 1.4.적극적인 인권 충보전략 수립·실시 1.5.인권위원회 역량 강화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포함 *지방사무소의 역량 강화 및 증설 포함</p> <p>2.1.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2.2.진정인 민족도 제고 2.3.구제기능과 정책기능의 통합적 수행 2.4.사전·예방적 활동 강화 2.5.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2.6.인권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인권위원의 인권현장 방문 활성화 포함</p> <p>3.1.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3.2.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3.3.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기반 구축 3.4.인권의식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p> | | |

내부 팀 및 외부위원 작성 전략계획 초안 내용(vision, mission, goal, objectives)

| 구 분 | 김종서 | | | 조효제 | 이창수 | | | 장주영 | | | | 배경내 | | | 내부팀 초안 | | | | | | | |
|------------|---|-----------------------------------|---------|---------------------------|--|--|------------|------------------|----------------------|--|------------|---------------------|-------------------|---|----------------|------------------------------------|--|---|--|--|--|--|
| Vision |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에 분노하는 한국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Mission | 인권의식의 고양과 반차별 의식의 확산,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인권 인프라 구축 | | | | 모든 인권침해 및 차별과 투쟁하는 국민의 인권위원회 | | | | | | | | | | | | | | | | | |
| Goal | 인권분야별 보호기준의 정립·강화와 이를 위한 기반 확립 | 인권 민족도 체계적 인극 대화를 통한 인권을 위한 기반 확립 | 인권의식 제고 | 국가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 | 모두를 위한 인권실천 공동체 실현 |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지평 조성 | 인권의 세계화 조성 |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신장 | 정책 권고 및 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 인권 단체와의 협력 강화 |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인권 영역 확장 및 인권지침 세부화 | 인권 관계망 확장과 지도력 발휘 | 인권 예방 강화 | 국제적 인권 기준의 일상화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신장 및 국제적 수준의 인권인프라 구축 | | | | | | |
| Objectives | 1.1.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1.2.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1.3.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구축 1.4.인권위원회 구성원의 역량과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 | | ●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정치적·제도적 환경조성 ●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집단을 집중적으로 발굴·대변 ●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은 집단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영향력 제고 | 인권수호 각오와 권리에 맞서는 용기를 담은 짧고 힘 있는 표현 | | | | 1.1.종합적인 인권 예방 정보체계 개발 및 도입 1.2.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연구와 역량 강화 1.3.국가인권보장체계 정비와 정책제시 및 실현노력 1.4.현장 모니터 활동의 강화와 관련제도 개선 1.5.인권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구제 대책 강구 1.6.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 1.7.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체계 도입 | | | | 1.1.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실질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1.2.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적권조사 1.3.사회권분야의 인권취약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 | | 1.1.사회권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3세대 안전에 대한 전략적 연구 1.2.자유권, 사회권, 차별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옹호 전략수립 1.3.법률적 잣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권기준의 개발과 제시 | | | | |
| | 2.1.진정인 만족도 제고 2.2.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2.3.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 | ●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은 집단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영향력 제고 | | | | 2.1.인권발전 및 협력기금 조성 2.2.아시아 인권정보센터 설립 2.3.인권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2.4.인권연구자 촉진 및 인권전문 연구 지원 2.5.인권연구관 및 인권교육관 등 신설 및 별정직 또는 계약직화 2.7.인권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 | | | 2.1.인권위 전체부문별 민간 인권진영과의 협력 관계 전형 창출 2.2.유관 국가기관과의 협의 체계 정비와 공식비 공식 협의 강화 2.3.국제 인권지향 속에서 전략적 관계망 형성 | | | | 2.1.진정인 만족도 제고 2.2.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2.3.사건처리 체계 정비 2.4.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 2.5.직권·방문조사 활성화 2.6.효과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2.7.차별시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 | | | |
| | 3.1.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3.2.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3.3.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기반 구축 3.4.인권의식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 | | | | 3.1.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활동 강화 3.2.지방인권위원회 또는 지방인권교육원 추진 3.3.언론, 방송 및 대기업의 인권 존중의식 제고 | | | | 3.1.인권단체와의 전략적인 협력체계 구축 3.2.조사구제 활동에서 인권단체와 협력 3.3.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 | | | | 3.1.정책 기능과 구제기능의 통합적 수행 3.2.인권침해 현장 감시 활동의 적극적 시도 3.3.인권교육과 홍보 활동 강화, 평가 체계 수립 3.4.전정제기 취약집단에 대한 방문조사·직권조사·실태조사 등 활성화 3.5.인권위원회의 인권현장 방문 활성화 3.6.인권침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빌언기회 창출(취약집단 초청 청문회 개최 등) 3.7.주요 재판과 입법 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 | | | | 3.1.인권교육 별제화,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추진 3.2.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3.3.모든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의무화 3.4.시민·지역사회 인권 역량 강화 지원 | | | | |
| | | | | | | 4.1.국제밀접협력기금을 통한 국제인권 밸전을 위한 공적기여 확대 4.2.유엔 고등판무관실과의 실질적인 협력 4.3.인권관련 국제규약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4.4.EU와의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강화 | | | | 4.1.차별시정기능의 효율적 추진 4.2.진정인 만족도 제고 | | | | 4.1.국제적 차원의 인권논의, 기준, 자료의 적극적·번역 소개와 홍보 강화 4.2.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인용하게 하기 위한 연구와 협의 4.3.국내 법규와 정책을 국제적 인권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와 협의 4.4.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의 즉각적 이행을 위한 국내 행동계획 수립 지원과 이행감시 | | | | | | | | |

(Strategies)

| 구 분 | 김종서 | 이창수 | 장주영 | 배경내 | 내부팀 조안 |
|------------|---|--|---|--|--------|
| | 1.1.1.공공부문 인권침해 판단기준 확립 1.1.2.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체계 구축 1.1.3.공공부문 인권침해 및 그 시정 시례의 정리보급 1.2.1.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1.2.2.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1.2.3.사회권 연구역량 강화 1.2.4.반차별의식 강화 정책 개발 1.3.1.정부의 인권 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1.3.2.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1.3.3.해외인권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1.3.4.인권침해 가능기관의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1.3.5.아시아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 1.3.7.증기 과제로서 인권전반에 대한 인권법 제정추진 | 1.1.1.인권관련 통계의 제계적인 권리 기법의 도입 1.1.2.국가의 인권침해와 차별의 지수화를 통한 “인권조치경보시스템” 도입 1.1.3.국가기관별 인권 실천 점검체계의 과학화 1.1.4.NAP 추진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모니터링 및 기술적 협력체계 확립 1.2.1.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도입시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1.2.2.국가기관(국회, 법원 포함)의 제도 입안 시 인권 자기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 1.3.1.소극적인 인권보호체계를 적극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체계 도입을 겸토 및 도입을 통한 인권선진국 실현 1.4.1.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통보제도’를 도입하여 경경, 군, 경찰 등의 인권침해를 실시간 파악하여 조치하는 방안 마련 1.4.2.지역별 인권단체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권침해감시단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 또는 지원 1.4.3.면전진정 및 현장조사 범위를 병영, 전의 경 시설 및 새터민 정착시설로 확대 | <인권정책분야> 1.1.사회권분야 NAP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강화 1.2.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 <조사구제분야> 1.5.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1.6.사회권 분야에 대한 구제기능 강화 1.7.인권취약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의 적극적인 조사 및 공개 <인권교육분야> 1.8.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1.9.사회권 분야의 인권신장을 위한 홍보 강화 | 1.1.1.사회권 연구 역량의 강화 1.1.2.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특정 영역 사회권 분야의 정책개발 1.1.3.사회권에 맞추어진 인권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1.2.1.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1.2.2.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강화 1.2.3.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개선 1.2.4.중·단기 과제로서의 인권제도의 선택과 그에 맞는 대책 강구 1.2.5.관련기관과의 활발한 정책 협의 1.2.6.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자침 1.3.1.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 협력 활동 강화 1.3.2.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1.3.3.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체제의 정비 및 강화 | |
| Strategies | 1.4.1.인권위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1.4.2.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 강화 1.4.3.인권자료 수집 및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1.4.4.인권위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강화 1.4.5.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구축 1.4.6.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체제 정비·강화 2.1.1.사건처리체계 정비 2.1.2.사건처리 안내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보급 2.1.3.사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시스템 개발·실시 2.1.4.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직권방문조사의 활성화 2.1.5.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 2.2.1.연도별 중점 사전 예방적 활동분야 선정·공개 2.2.2.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2.2.3.대국민 홍보 강화 2.3.1.인권위법상 차별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2.3.2.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 1.5.1.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 구제 조치 강화 1.5.2.진정사건 인용률 목표제 도입 1.5.3.진정인 만족평가제도 도입 1.5.4.인권전화적인 조사 기법 개발 및 운영 1.5.5.조사요원 확충을 통한 적시 구제 체제 확립 1.5.6.기획조사 강화를 통한 역지역 확보 1.5.7.전문적인 법적 상담요원의 확충 및 전문 심리상담 요원의 개별 상담제도 도입 또는 전문의료인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한 인권해결 역량 강화 1.5.8.인권공직자상의 정립 및 인권공직자 실천현장 제정을 통한 공무원 자율적 혁신 유도 | <인권정책 분야> 2.1.1.인권침해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2.2.관련기관과의 활발한 정책협의 및 권고 2.3.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 적극적 의견개진 <조사구제 분야> 2.4.연도별 중점 사전 예방적 활동분야 선정 2.5.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직권방문 조사 활성화 | 1.4.1.인권위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설치 1.4.2.연구모임 및 학습 동아리 운영 1.4.3.인권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1.4.4.인권전문가들에 대한 과감한 문호 개방 1.4.5.인권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활용 극대화 2.1.1.진정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진정처리 자연 방지 2.1.2.현장 해결형 사건처리 방식 지향 2.1.3.진정 접수 및 처리과정 인터넷 안내 시스템 개발·제공 2.1.4.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진정인 만족도 평가시스템 개발·실시 2.2.1.연도별 중점 사전·예방적 활동분야 선정·공개 | |

| | | |
|--|---|--|
| <p>2.3.3.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p> <p>2.3.4.조사관의 전문성 강화</p> <p>2.3.5.차별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p> <p>3.1.1.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p> <p>3.1.2.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p> <p>3.1.3.인권교육자 협의체 구성 지원</p> <p>3.1.4.인권교육자 및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p> <p>3.2.1.인권교육과정 설립</p> <p>3.2.2.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개발 지원</p> <p>3.2.3.교사양성단계에서 인권교육 의무화</p> <p>3.2.4.교사 인권연수 프로그램 운영</p> <p>3.2.5.천인권적 학교환경 조성 캠페인</p> <p>3.2.6.아동청소년 인권감수성 증진행사 및 지원</p> <p>3.3.1.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p> <p>3.3.2.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재 개발</p> <p>3.3.3.공무원 인권연수과정 개설·운영</p> <p>3.3.4.군인법 집행공무원 등 우선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 집중 지원</p> <p>3.3.5.공공부문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p> <p>3.4.1.언론, 기업,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 등 인권 교육 우선대상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p> <p>3.4.2.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의 인권교육활동 지원</p> <p>3.4.3.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p> <p>3.4.4.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p> <p>3.4.5.인권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p> | <p>2.1.1.인권발전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령 근거 추진</p> <p>2.1.2.민간 인권 영역의 중장기적 인권과제 및 인권활동 지원</p> <p>2.1.인권학의 발전을 위한 (가칭) 아시아인권 정보센터라는 국민도서관 설립 추진</p> <p>2.2.수시로 (단기 체험 중심의) 국민 인권교육 마당 개설하여 인권전문활동가들의 자율적인 토론 및 국민 교육장화 추진</p> <p>2.3.1.국가인권위원회 대외협력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강화</p> <p>2.3.2.주요 인권정책 수립 단계에서 인권단체와의 협의 법령화</p> <p>2.3.3.주요 인권정책 집행 및 평가 단계에서 인권단체의 협력과 독자성 보장</p> <p>2.3.4.매년 유엔 인권관련 회의에 한국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전, 외무부 등 정부측과 민간 인권단체와의 대화 촉진을 위해 가칭 “대유엔인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p> <p>2.4.1.인권전문 저널 발간(영문, 한글)</p> <p>2.4.2.대학원 과정에서 인권전문대학원 또는 인권(교육학) 석사/박사 과정 개설 및 인권 활동가 입학 할당제 도입</p> <p>2.5.1.인권연구 및 인권교육 자체의 별도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p> <p>2.5.2.해당 자체에 인력풀을 상시 가동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 등으로 민간과 국가 영역의 연계성 강화</p> <p>2.6.1.인권피해 구제자들을 중심을 인권서포터즈 제도 운영, 소모임 활동 지원</p> <p>2.7.1.사역역을 포함한 인권 이해당사자 및 의무당사간의 국민적인 협의 기구 추진</p> <p>2.7.2.인권발전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p> <p>3.1.1.지방자치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경, 교통,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인권보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칭 “올해의 인권도시” 선정 발표</p> <p>3.1.2.지방자치체를 위한 인권증진을 위한 가이드북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술적 지원 체계 확립</p> | <p>3.3.인권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소통체제 마련</p> <p>3.4.조사구제 분야</p> <p>3.5.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인권단체와의 협력</p> <p>3.6.인권 시민·지역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지원</p> <p>3.7.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p> <p>2.2.1.인권교육·홍보 등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p> <p>2.2.1.1.조사대상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p> <p>2.2.1.2.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p> <p>2.2.1.3.대국민 홍보강화(공익광고 실시, 뉴스레터 발행 등)</p> <p>2.3.1.지속적인 사건처리 절차 개선</p> <p>2.3.2.사건처리 매뉴얼 작성·유지</p> <p>2.3.3.위원회 특성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조사 절차 개발·실시</p> <p>2.4.1.검·경, 교정 등의 분야는 개별진정사건 처리와 병행하여 관행·제도 개선에 주력</p> <p>2.4.1.1. 1단계: 비인권적 관행 및 태도의 개선(반말, 폭언, 비하발언 등)</p> <p>2.4.1.2. 2단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제도의 개선(긴급체포, 지명수배, 불심견문, 장구사용, 징벌 등)</p> <p>2.4.1.3. 3단계: 구금보호시설 환경개선(의료시설, 정벌방, 식당, 목욕시설, 화장실 등)</p> <p>2.4.2.군, 다수인보호시설 등의 분야는 인권개선 기반 조성에 주력</p> <p>2.4.2.1.병영문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개발</p> <p>2.4.2.2.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상황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개발</p> <p>2.4.2.3.전정 절수원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p> <p>2.5.1.인권취약 분야(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병영시설, 센터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직권·방문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p> <p>2.5.2.연도별로 분야별 직권·방문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p> <p>*인권위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집단에 대한 직권·방문조사를 우선실시</p> <p>2.6.1.차별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p> |
|--|---|--|

| | | |
|--|---|---|
| | <p>3.1.3.지방자치체(광역)와 인권 협약 체결 추진</p> <p>3.2.1.지방 조례를 통한 지방인권위원회 설치 및 이 기구를 통한 지방조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검토</p> <p>3.2.2.광역별 지방인권교육원을 추진하거나 지방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인권 과정 의무화</p> <p>3.3.1.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서의 인권 존중 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p> <p>3.3.2.인권침해 및 차별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및 법적 재제 조치를 취할 근거 검토 및 연구</p> <p>3.3.3.언론, 방송의 인권침해 예방과 실천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p> <p>4.1.1.제3세계 인권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기금 기여 확대</p> <p>4.1.2.인권활동가들과 연계한 국제인권 이슈에 대한 적절한 입장 표명의 제도화</p> <p>4.2.1.유엔 고등판무관실에 인권주제관 파견제도 상설화</p> <p>4.2.2.유엔내에 인권활동가 견습 또는 자원활동제도 개발 및 지원</p> <p>4.2.3.국제인권 협안에 대한 외무부 등 정부 입장에 대해 인권적 검토 및 권고</p> <p>4.3.1.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분야 국제조약 협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p> <p>4.3.2.민주화 이행 경험의 국제적인 이전을 위한 연구 및 추진 검토</p> <p>4.4.1.EU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 협의회와 우리 정부와의 정례적인 "Human Rights Dialogue" 개최</p> <p>4.4.2.관련 EU 기구와 인권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p> <p>4.4.3.EU 단기 실무 연습을 위한 국비 장학생 파견 체계 마련</p> | <p>근거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추진</p> <p>2.6.2.인권위법상 명시되어 있는 19개 차별사유 및 영역별 판단기준 정립</p> <p>2.6.3.장애, 성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차별심의 기능 보강</p> <p>2.6.4.조정위원회 구성 및 실질적 활용으로 피해자 구제방법 다양화</p> <p>2.6.5.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p> <p>2.7.1.조사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p> <p>2.7.1.1.조사관 수준별, 차별 사유 및 영역별로 세분화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p> <p>2.7.1.2.조사관의 교육 이수率를 제도화</p> <p>2.7.2.다양한 차별 사유 및 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p> <p>2.7.2.1.차별 사건 판단을 위한 자문그룹으로 활용</p> <p>2.7.2.2.위원회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성 있는 정보 취득</p> <p>3.1.1.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교육원 설립</p> <p>3.1.2.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p> <p>3.1.3.인권교육 협의 및 이행 모니터링</p> <p>3.1.4.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p> <p>3.1.5.인권교육자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인권 교육 전문가 양성, 풀 구성 및 운영, 재교육)</p> <p>3.2.1.인권교육과정 수립</p> <p>3.2.2.인권교육 교재 개발 보급 및 활용</p> <p>3.2.3.교사 연수 및 인권연구학교 운영</p> <p>3.2.4.천인권적 학교환경 조성 캠페인</p> <p>3.2.5.아동청소년 인권 감수성 증진 행사 및 지원</p> <p>3.3.1.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의 강화</p> <p>3.3.2.공공분야 인권교재 개발</p> <p>3.3.3.공무원 인권 직무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p> <p>3.3.4.우선 대상(군대) 인권 교육 집중 지원</p> <p>3.3.5.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측진</p> |
|--|---|---|

| | | | | |
|--|--|------------------------------|--|---|
| | | 제2차 인권기본권과 비전·지향·목표 1부(안) | | 3.4.1.연론인, 기업, 다수인 시설증사자 등 인권교육 우선 대상자에게 교육실시 3.4.2.인권 시민·지역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지원 3.4.3.인권옹호를 위한 컨텐츠 개발·제공 3.4.4.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3.4.5.인권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
|--|--|------------------------------|--|---|

제2기 인권위원회 비전·사명·목표·전략(안)

김종서

I. 개관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3대 방향, 즉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인권교육 및 예방기능 강화,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2기 인권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상과 인권위원회상을 담은 비전(Vision)과 그에 따른 사명(Mission)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정책, 조사·구제, 인권교육의 3개 분야별로 목표(Goal)와 세부목표(Objectives)와 추진전략(Strategies)을 수립함.

II. 비전과 사명

1. 비전(Vision)

비전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에 분노하는 한국사회

1) 설정 배경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상(像)과 인권위원회상(像)이 아울러 제시되어야 하므로, 비전은 이원적 방향을 하나로 통합한 문구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2기 인권위원회가 원하는 사회상(像):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에 분노하는 한국사회”

현재로서는 제2기 인권위원회가 3년 후 어떤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음. 따라서 3년 후인 2008년에 인권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보다는 인권진영(?)에서 3년 후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여기고 있는 사회상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인권이 보장된다거나 공공부문의 인권침해가 해결된다거나 하는 거창한 목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공공부문이건 사적부문이건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닐까?

3) 제2기 인권위원회가 원하는 인권위원회상(像):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리잡는 것이 최대한이 아닐까 함. 실제 효과적인 구제에는 권한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접근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권위원회상이 아닌가 함.

4) 통합의 어려움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한 문구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비전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그렇게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후자의 문제는 사명 또는 전략 등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

2. 사명(Mission)

| | |
|----|--|
| 사명 | 인권의식의 고양과 반차별의식의 확산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인권 인프라의 구축 |
|----|--|

1) 배경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제2기 위원회가 해야 할 과업을 슬로건화해야 함.

사명의 설정에는 인권에 관한 ‘의식’과 ‘실천’의 두 가지 차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2) 사명 1: 인권의식의 고양과 반차별의식의 확산(이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임)

반인권적 행위에 분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의 측면에서, 국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반차별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1차적 사명으로 설정될 수 있음

3) 사명 2: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인권 인프라의 구축

그러나 위의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의식의 제고, 확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의식을 축적시키고 구체적 실천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는 곧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제적·국내적 인프라의 구축을 의미하며 이것 역시 인권위원회의 주요한 사명으로 설정되어야 함.

III.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명은 아래의 인권정책, 조사구제, 그리고 인권교육의 3개 분야 모두에서 보다 명확한 목표·세부목표·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됨. 3개 분야는 그 각각의 내용에서 의식과 인프라 구축의 두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

1. 인권정책분야

1) 목표(Goal): 인권분야별 보호기준의 정립·강화와 이를 위한 역량 강화

인권정책 분야에서는 인권분야를 크게 시민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보호기준을 정립하거나 그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세부목표(Objectives) 및 추진전략(Strategies)

① 세부목표 1: 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체계의 확립

공공부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립하여 이러한 기준이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준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인권침해에 관한 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도 및 관행을 확립함.

- 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확립
- 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 인권침해 및 그 시정 사례의 정리·보급

② 세부목표 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시민권분야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사회권 상황 실태조사와 그 활용
-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 개발
- 사회권 연구역량의 강화
- 반차별의식 강화 정책 개발

③ 세부목표 3: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 구축

이러한 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관행을 수립, 구축하고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

- 정부의 인권 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 해외인권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Benchmarking
- 인권침해 가능기관의 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 아시아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
- 중기 과제로서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법 제정 추진

④ 세부목표 4: 인권위원회 구성원의 역량과 대내외 협력 체제 강화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의 역량과 대내외적인 협력체제가 매우 강화되어야 하고 바로 이러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때 국민의 신뢰도 획득될 수 있을 것임

- 인권위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 강화
- 인권자료 수집 및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 인권위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강화
-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구축
-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체제 정비·강화

2. 조사·구제 분야

1) Goal: 인권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기반 확립

사전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조사·구제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인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세부목표(Objectives) 및 추진전략(Strategies)

① 세부목표 1: 진정인 만족도 제고

직접적 인권피해자인 국민들의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진정인의 만족도를 제고함

- 사건처리체계 정비
- 사건처리 안내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시스템 개발·실시
-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직권·방문조사의 활성화
-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

② 세부목표 2: 사전예방적 활동 강화

인권침해 발생 후 대처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전활동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연도별 중점 사전·예방적 활동분야 선정·공개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③ 세부목표 3: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영역별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인권위법상 차별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
-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 차별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3. 인권교육 분야

1) Goal: 체계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인권과 인권위원회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함

2) 세부목표(Objectives) 및 추진전략(Strategies)

① 세부목표 1: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인권교육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자 협의체를 구축하여 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함

-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 인권교육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Education) 수립
- 인권교육자 협의체 구성 지원
- 인권교육자 및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② 세부목표 2: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함

- 인권교육과정 수립
-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개발 지원
- 교사양성단계에서 인권교육 의무화
- 교사 인권연수 프로그램 운영
- 친인권적 학교환경 조성 캠페인
- 아동·청소년 인권 감수성 증진 행사 및 지원

③ 세부목표 3: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기반 구축

공공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매우 절실함.

-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재 개발
- 공무원 인권연수과정 개설·운영
- 군인·법집행공무원 등 우선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 집중 지원
- 공공부문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④ 세부목표 4: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시민사회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및 다양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언론인, 기업, 다수인 시설 종사자 등 인권교육 우선대상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의 인권교육활동 지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IV. 전체 요약

| 구분 | 비전과 사명 | 목표 | 세부목표 | 추진전략 |
|---------|--|--|---|--|
| 인권정책 분야 | <p><u>비전</u>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에 분노하는 한국사회</p> <p><u>사명</u> 1. 인권의식의 고양과 이를 위한 역량 강화 2.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인권 인프라의 구축</p> | <p>인권분야별 보호기준의 정립·강화와</p> <p>1. 인권의식의 고양과 이를 위한 역량 강화 2.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인권 인프라의 구축</p> | <p>세부목표 1: 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체계의 확립</p> <p>세부목표 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p> <p>세부목표 3: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 구축</p> <p>세부목표 4: 인권위원회 구성원의 역량과 대내외 협력 체제 강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확립 ● 공공부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 인권침해 및 그 시정 사례의 정리·보급 ● 사회권 상황 실태조사와 그 활용 ●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 개발 ● 사회권 연구역량의 강화 ● 반차별의식 강화 정책 개발 ● 정부의 인권 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 해외인권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Benchmarking ● 인권침해 가능기관의 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 아시아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 ● 중기 과제로서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법 제정 추진 ● 인권위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계 강화 ● 인권자료 수집 및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 인권위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강화 ●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체계 정비·강화 |

| 구분 | 비전과 사명 | 목표 | 세부목표 | 추진전략 |
|-------------|---|----------------------|-----------------------------|--|
| 조사·구제 분야 | 비전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 에 분노하는 한국사회 | 인권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기반 확립 | 세부목표 1: 진정인 만족도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처리체계 정비 ● 사건처리 안내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시스템 개발·실시 ●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직권·방문조사의 활성화 ●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 |
| | 사명 1. 인권의식의 고양과 반차별의식의 확산 2. 광범위하고 효과적 인 인권 인프라의 구축 | | 세부목표 2: 사전예방적 활동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중점 사전·예방적 활동분야 선정·공개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
| | | | 세부목표 3: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법상 차별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 ●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 차별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구분 | 비전과 사명 | 목표 | 세부목표 | 추진전략 | |
|------------|--|-------------------------|--|--|--|
| 인권교육 분야 | <u>비전</u>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 에 분노하는 한국사회 | 체계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 세부목표 1: 인권교육 기본계 획 수립·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 인권교육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Education) 수립 ● 인권교육자 협의체 구성 지원 ● 인권교육자 및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인권교육과정 수립 ●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개발 지원 ● 교사양성단계에서 인권교육 의무화 ● 교사 인권연수 프로그램 운영 ● 친인권적 학교환경 조성 캠페인 ● 아동·청소년 인권 감수성 증진 행사 및 지원 ●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재 개발 ● 공무원 인권연수과정 개설·운영 ● 군인·법집행공무원 등 우선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 집중 지원 ● 공공부문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 |
| | | | 세부목표 2: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인, 기업, 다수인 시설 종사자 등 인권교육 우선대상 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의 인권교육활동 지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
| | <u>사명</u> 1. 인권의식의 고양과 반차별의식의 확산 2. 광범위하고 효과적 인 인권 인프라의 구 축 | | 세부목표 3: 품무원 등 공공부 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인, 기업, 다수인 시설 종사자 등 인권교육 우선대상 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의 인권교육활동 지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
| | | | 세부목표 4: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인, 기업, 다수인 시설 종사자 등 인권교육 우선대상 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의 인권교육활동 지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

몇 가지 전제

-발전기획단의 목적은 국가인권위 조직내부의 사명 재정립과 혁신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1.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인권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2. 대내적으로: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업무전략팀이 해야 할 일은 인권위 2기의 기본정신, 관점, 각오와 같은 측면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됨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좋은 아이디어의 제시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루 사안이 아니며, 그런 것들은

1. 인권위의 일상활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흘러 나와야 하고
2. 상황에 따라 기민하고 융통성있게 처리되어야 하며
3. 언제라도 필요하면 첨삭,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인권정책은 ①기본방향 제시-②의제설정-③정책결정-④시행-⑤평가의 사이클로 이루어짐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전략기획팀의 논의는 주로 사무처 중심의 ②, ③, ④, ⑤ 항목에 치중된 느낌

인권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①의 기능은 인권위원들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논의에서 배제된 듯한 느낌이 있음

-또한 인권위원들의 임무로는 ①기본방향 제시 외에도 인권위원들 전체의 인권수호 의지

대국민 이미지

도덕적 리더십

비당파적 인권정신

대중과의 교감 및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등이 있을 것임. 이러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발전기획단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이러한 '전체를'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사무처 내부에만 초점을 맞춰서 업무전략기획을 논의하게 되면

1. 그렇잖아도 과도하게 많은 '고정성' 업무에 시달리는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2. 상부에서 이미 결정된 틀, 즉 주어진 구조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무처 직원들에게만 애꿎게 혁신과 전략창출을 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함.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것임

3. 따라서 조직 내부의 업무혁신과 합리성 제고도 중요하나, 인권위의 존재목적을 뚜렷이 하고, 인권침해 세력과의 대결구도를 명확히 하며, 신바람 나는 근무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발전기획의 핵심이라고 판단됨

비전

-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잠재적인 인권피해자의 편에 서서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
- 거대권력과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항해 국민 편에 서겠다는 용기 있는 내용이 필요함
- 짧고 단순하면서도 힘 있고 심금을 울리는 문장이 필요
- 이 부분은 내부공모 또는 대국민 공모의 형태로 접근하면 어떨까?

미션 (관점)

1. 전 사회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
 - 예) 각종 법령 정비, 개폐, 국제적 기준과의 일치 등
장애인 시설 입주조건 개선 등
 2. 인권의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집단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대변한다
 - 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3. 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인다
 - 예) 범집행 공직자
수용시설
군대 등
 4.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킨다
 - 예) 인권교육, 공무원 임용, 등
 5.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의 영향력을 높인다
 - 예) 인권영향력 평가제, 등
- 이와 같은 5대 미션을 참신한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 미션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더라도 대국민 발표를 위해서는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 향후 인권위 자체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2. 미션에 따른 실천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전략: 인권위의 각 부서가 할 일

- 각 부서에서는 기존에 해오고 있는 일반업무와 계속사업에 있어서 위의 5대 미션(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예각화, 재구성한다 (기존 사업을 완전히 변경시키라는 뜻이 아님)
- 또한 그 안에서도 인권위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인권위원장의 의지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면 정해 본다
- 비전과 미션, NAP 등을 감안하여 새롭게 추진할 사업영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 바로 이 부분이 각 부서 수준에서는 Goal(목표)이 되며, 이것보다 하위에 Objective(세부목표)와 Strategy(추진전략) 등이 배치되도록 한다

전략계획 초안

- 장주영 -

- 제가 주장한 방식을 핵심목표 3가지와 내부팀의 초안을 바탕으로 다소 부실하지만 다음과 같이 뼈대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추진전략은 보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3가지 목표외에 중점과제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은 차별기능이 추가되면서 '차별시정기능의 효율적 추진'과 진정인 만족도 제고 등과 관련한 '대국민서비스의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아래 중점과제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2기 위원회가 추진할 3년간의 전략계획이라면 기존에 위원회가 해왔던 업무 중에서, 혹은 새롭게 부여되는 업무 중 특히 앞으로 중점을 둘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그 성격에 맞으며 그 것이 나중에 2기 위원회를 평가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략계획은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우선 순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의 성격상 관계 부서에서 일상 업무중에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예컨대 NAP추진팀처럼 별도의 인원이나 예산으로 팀을 꾸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외에 인권위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인권위의 업무중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내의 연간계획이나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계획에 들어갈 내용까지 전략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작업이 매우 방대해지고 3개년 전략계획이라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목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신장

세부목표

1.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실질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2.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직권조사
3. 사회권분야의 인권취약시설에 대한 인권교육강화

추진전략

[인권정책분야]

1. 사회권분야 NAP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강화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
3. 선택과 집중에 의해 사회권분야의 특정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4. 사회권분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방안 강구

[조사구제분야]

1.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2. 사회권분야에 대한 구제기능강화
2. 인권취약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의 적극적인 조사 및 공개

[인권교육분야]

1.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교육강화
2. 사회권분야의 인권신장을 위한 홍보 강화

목표: 정책권고 및 사전 예방적 활동강화

세부목표

1. 인권침해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 권고
2. 사전예방적 조사 강화
3. 인권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인권교육 실시

추진전략

[인권정책분야]

1. 인권침해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2. 관련기관과의 활발한 정책협의 및 권고
3. 인권관련정책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조사구제분야]

1. 연도별 중점 사전·예방적 활동분야 선정
2.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직권방문조사 활성화

[인권교육분야]

1. 인권침해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2.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의강화

목표: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

세부목표

1. 인권단체와의 전략적인 협력체계 구축
2. 조사구제활동에서 인권단체와 협력
3.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

추진전략

[인권정책분야]

1. 인권단체와의 전략적인 협력체제 구축
2. 인권위활동의 투명한 공개
3. 인권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 소통체제 마련

[조사구제분야]

1. 조사대상선정에 있어서 인권단체와의 협력
2. 인권단체와 공동조사 등 조사활동에서 협력강화

[인권교육분야]

1. 인권 시민·지역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지원
2.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

2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목표 제안(초안)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 업무목표 제안

I. 인권영역 확장 및 인권지침의 세부화

<문제의식>

- 1기 인권위는 자유권 중심으로 경도되어온 인권개념의 협소화 문제, 곧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한편 이른바 '제3세대 인권'을 한국사회에서 의제화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이에 따라 사회권에 대한 대응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평화권, 환경권, 발전권 등 소위 제3세대 인권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음.

- 또한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홍보와 대중적 인권교육사업(예: 인권교육문예작품 발간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반차별 의식을 어느 정도 확산시킨 성과를 거둔 반면, 사회권은 물론 자유권에 대한 인권의식 확산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 이로 인해 차별 중심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양산함.

- 한편 인권침해와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권침해 현장의 감수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법률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를 종종 보임으로써 적극적인 인권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권적 감동을 주지 못함.

- 인권위는 기존 사법기구와는 달리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를 통해 인권위는 변별성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1기 인권위의 경우 몇몇 차별 영역에 대한 진정 구제를 제외하고는 추상적 국제인권기준을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일상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세부화된 인권지침을 마련·제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무엇보다 2기 인권위는 인권개념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법률적 잣대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권의 논리와 기준을 확립하려는 적극성이 요구됨. 이는 향후 개헌 정국시 기본권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가짐.

<세부내용 예시>

○ 사회권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3세대 인권에 대한 전략적 연구 ← 자유권 중심의 인권개념 탈피

○ 자유권, 사회권, 차별 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홍보 전략 수립 ← 차별 중심의 인권홍보 전략의 수정

○ 법률적 잣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권기준 개발과 제시 → 인권위원 연수계획 수립, 적극적인 인권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와 안전준비 과정의 정비, 세부 인권지침의 제정과 사회적 논의 활성화

II. 인권 관계망 촉진과 지도력 발휘

<문제의식>

- 1기 인권위는 인권단체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으며, 유관 국가기관과의 협의력도 확보하지 못해 왔음. 이에 따라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권고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도 방법도 없었음.
- 인권 관계망을 촉진하는 것은 민간 인권진영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국가 기관과의 협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포함됨. 특히 인권 관계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면, 2기 이후에도 중요한 인권 동력으로 기능할 것임.
- 한편, 국제적 차원의 인권 관계망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함. 다만 국제적 경험이 부족하고 국제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제 인권지형 속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인권 관계망은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망 속에서 인권위의 지도력이 관철되어야 할 것임. 지도력이 관철된다는 뜻은 인권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뜻이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모아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인권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뜻임.

<세부내용 예시>

- 인권위 전체 · 부문별 민간 인권진영과의 협력 관계 전형 창출
- 유관 국가기관과의 협의 체제 정비와 공식 · 비공식 협의 강화
- 국제 인권지형 속에서 전략적 관계망 형성

III. 인권 예방기능과 현장성 강화

<문제의식>

- 1기 인권위는 쏟아지는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구제 기법의 노하우를 상당히 쌓은 것으로 보임. 진정은 사람들이 인권위와 접하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이고, 진정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그러나 진정사건 처리는 개별적, 사후적, 수동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왜냐하면 인권침해의 원인을 제거하여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신장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인권 예방기능의 강화가 절실했.
- 또한 진정사건 처리에 치중하다 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취약집단의 인권옹호활동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큼. 아울러 진정이 제기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인권위가 존재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성과 감수성이 크게 떨어짐.
- 인권위는 또 현안으로 제기되는 인권문제(주요 재판, 국회 입법과정, 사법처리나 사회적 논란의 핵심으로 제기되는 인권사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왔음. 인권위가 모든 현안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전략적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대표적 현안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인권기준을 널리 그리고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권위는 전문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임.

<세부내용 예시>

- 정책기능과 구제기능의 통합적 수행
- 인권침해 현장 감시 활동의 적극적 시도
- 인권교육과 홍보 활동 강화, 평가체계 수립
- 진정제기 취약집단에 대한 방문조사·직권조사·실태조사 등 활성화
- 인권위원들의 인권현장 방문 활성화
- 인권침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발언기회 창출(취약집단을 직접 초청하는 청문회 활성화 등)
- 주요 재판과 입법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

IV. 국제적 인권기준의 일상화

<문제의식>

- 1기 인권위는 각종 국제대회에 참여하여 국제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제7차 국가인권기구 대회를 개최한 저력이 있음. 또한 한국은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의장국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위법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인권위의 역할 중 하나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임. 이에 따라 준국제기구로서 부여받는 인권위의 업무목표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국내 국가기관 중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는 기관은 인권위 이외에는 없기 때문임
-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국제인권기준을 한국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원칙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법원이 국제인권기준을 판결에 인용한 예가 거의 없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국제인권기준은 추상적 원칙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인권위도 국제인권기준을 기계적으로 원용할 뿐 풍부하게 해석·발전시키는 못하고 있는 수준임.

<내용>

- 국제적 차원의 인권논의, 기준, 자료의 적극적 번역 소개와 홍보 강화
-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인용하게 하기 위한 연구와 협의
- 국내 법규와 정책을 국제적 인권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와 협의
-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의 즉각적 이행을 위한 국내행동계획 수립 지원과 이행 감시

□ 2기 인권위 업무전략안 전체구조

- 업무전략 배경과 목적
- 업무전략 구성 과정
- 현 인권상황 개괄
- 비전과 사명
- 업무목표와 핵심영역
- 업무목표에 따른 세부목표, 부서별 일반적 추진전략, 핵심영역 관련 특별전략
- 부서별 목표, 일반적 추진전략, 핵심영역에서의 특별전략
-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 ※ 핵심영역은 아직 고민 중에 있어 여기서 초안도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 경청한 이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부서별 목표와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인권위 내부 초안이 구체화된 이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의 중기 비전과 임무, 목표/세부목표 수립에 관한 의견

이창수(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위원/새사회연대 대표)

1. 현단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와 비전 선포의 의의

- 주지하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전을 선포한다는 것은 기관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임.
- 이는 우리 사회 또는 정부기관의 인권 관련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내용인 “인권 정책 NAP 권고안(이하 NAP 권고안)”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방향을 NAP 권고안에 담았다면 비전 선포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자기 의지의 표현이고 국가기관으로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함.
- 즉 앞으로 추구해야 할 내용이 NAP 권고안이라면, 비전 선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보충적인 추진동력(인권적 변동과 변화를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촉매로서의 추진동력 또는 인권선진국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력 확보)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 내부의 혁신(현재의 조직개편 논의를 축으로 하는 재편과 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과 현 단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에서 차목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하고, 추진의 실질적 힘인 인권공동체(국가인권위 + 인권시민사회단체 + 인권고객 + 보편적인 인권흐름에 있는 운동력)와 인식통일을 위해서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정립함으로써 사람속에 뿌리박은 진정한 또는 유일한 국가기관(또는 실질적인 共治 good governance)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장치로서의 국가인권기구로 거듭나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선포는 단순한 언사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으로 제시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기존 관성을 탈피하려는 조직혁신과 가용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노력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단계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고 무엇을 위한 비전인지가(whose for what?) 분명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 선포 또는 비전 구상은 결국 위의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권공직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인권공동체의)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서이자, (2기 지도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기의지 표현이다.

2. 비전의 구성 내용 검토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전 수립 및 선포의 문제는 2기의 지도부(또는 인권공동체)의 우리 사회의 인권인식 또는 인권발전단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인데, 이창수의 생각으로는 2기 지도부의 임무는 첫째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인권분야(예, 자유권과 차별영역 그리고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확보와 관행의 시급한 극복, 둘째 잔여적으로 인식되는 인권분야(예, 사회권, 연대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영역)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관행의 극복을 위한 추진 기반 확보(제도, 연구, 실태조사 등), 셋째 인권공동체 형성의 가시화 또는 물화, 넷째 국제 인권 사회와의 실질적인 연대 및 기여를 위한 기반 확보이다.

- 위의 2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운영 방침은 2기 지도부가 제시한 바 있는 “사회권 분야 강화”, “예방적 활동의 강화”,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라는 3대 강화 기조 또는 지도 방침이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비전으로 제시되기 어렵다고 본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 선포문의 체계/형식과 내용범위는 “비전과 임무 영역”에서는 4대 과제(국가기관의 인권침해의 효과적 관리 실현, 인권공동체 가시화 실현, 인권영역의 수평적 확대 기반조성, 국제적인 인권발전에 기여할 기반 조성)와 3대 동인(인권공직자, 인권공동체, 2기 지도부), 3대 운영 기조(3강화 운영기조 : 사회권 강화, 예방 활동 강화, 인권단체 협력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표와 하위 목표” 영역에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정책, 조사 및 피해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협력의 4대 분야로 제시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또한 이에 따른 추진 방법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수단 즉 권고, 의견표명, 조사(현장조사권 및 전문가 대동 권한 포함), 공청회, 긴급구제, 연구(학술연구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 법률구조 지원 및 인권교육 실시, 국내외 협력, 업무협의(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으로 유형화해서 각 부서별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적실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 세부목표별 추진주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내부에 한정하여 정하고(물론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임무 등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 나머지 대외 관계 즉 인권단체 등 인권공동체 관계, 타 공사 기관과의 업무 및 국제적인 협력 분야는 절차적인 규정으로 일상화하거나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이 절차적인 영역 자체는 목표로 해야 함. 위원회 내부의 추진주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워지는데,

- 제1그룹 : 2기 지도부 및 집행부 : 위원장(상임위원 포함), 위원; 사무총장/인권정책국장 (별정직이지만 정무적인 인사관행이 있음)
- 제2그룹 : 인권집행책임자 그룹 : (사무총장, 인권정책국장), 침해조사국장, 차별조사국장, 교육협력국장, 각급과장 및 담당관
- 제3그룹 : 인권집행공직자((인권연구(관/자), 인권보호(관/자), 인권교육(관/자), 인권협력(관/자))

* 인권공직자 : 2그룹과 3그룹 즉 임기직(사실상의 임기직 포함)을 제외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이다.

~ 추진 시기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 등의 적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토되고 실제로 이것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공개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비전을 선포할 때 시기별로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앞으로 3년 동안 시기에 따라 공표할 것인지.)

3. 비전 및 임무의 구체화(표 참조)

| 분야 | 비전 | 임무 | 이념 | 목표 | 하위목표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
| 모든 인권 침해에 차별과 차별만은 하늘 제어하겠습니다. | 국가의 인권 침해와 차별은 과학성과 현장성, 감수성, 적실성, 전문성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하겠습니다. | | | <p>①종합적인인권 예방 경보체계 개발 및 도입</p> <p>②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연구와 역량 강화</p> <p>③국가 인권보장 체계 정비와 정책 제시 및 실현 노력</p> <p>④현장 모니터 활동의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p> <p>⑤인권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구제 대책</p> <p>⑥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p> <p>⑦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체계 도입</p> | <p>①-a. 인권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기법의 도입</p> <p>①-b. 국가의 인권침해와 차별의 지수화를 통한 “인권조기경보시스템” 도입</p> <p>①-c. 국가기관별 인권 실천 점검체계의 과학화</p> <p>①-d. NAP 추진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모니터와 기술적 협력체계 확립</p> <p>②-a. 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도입시 사전영향평가제 도입</p> <p>②-b. 국가기관(국회, 법원 포함)의 제도 입안시 인권 자기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p> <p>③-a. 소극적인 인권보호체계를 적극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체계 도입을 검토 및 도입을 통한 인권선진국 실현</p> <p>④-a.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통보제도’를 도입하여 검경, 군, 경찰 등의 인권침해를 실시간 파악하여 조치하는 방안 마련</p> <p>④-b. 지역별 인권단체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권침해감시단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 또는 지원</p> <p>④-c. 면전진정 및 현장조사 범위를 병영, 전의경 시설 및 새터민 정착시설로 확대</p> <p>⑤-a. 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 구제 조치 강화</p> <p>⑤-b. 진정사건 인용률 목표제 도입</p> <p>⑤-c. 진정인 만족평가제도 도입</p> <p>⑤-d. 인권친화적인 조사 기법 개발 및 운영</p> <p>⑤-e. 조사요원 확충을 통한 적시 구제 체계 확립</p> <p>⑤-f. 기획조사 강화를 통한 억지력 확보</p> <p>⑤-g. 전문적인 법적 상담요원의 확충 및 전문 심리상담 요원의 개별 상담제도 도입 또는 전문의료인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한 인권해결 역량 강화</p> <p>⑤-h. 인권공직자상의 정립 및 인권공직자 실천현장 제정을 통한 공무원 자율적 확산 유도</p> <p>⑥-a. 모든 국가기관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MOU) 추진</p> <p>⑥-b. 사안별 상시 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p> <p>⑥-c. 매년 국가기관별 인권실천 목표제 도입</p> <p>⑦-a. 법집행 공무원 전담 인권교수 요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p> <p>⑦-b. 인권 감수성 중심의 인권교육 교재 개발</p> | | |

| | | | |
|-----------------------------|--|---|--|
| | | | <p>⑦-c. 국가기관별 단기적인 인권(교육)공직자 파견제도 검토 ⑦-명예인권(교육)공직자 제도 운영을 통한 민간 인권 경험 공유 및 반영</p> <p>①-a. 인권발전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령 근거 추진 ①-b. 민간 인권 영역의 중장기적 인권과제 및 인권활동 지원 ②-a. 인권학의 발전을 위한 (가칭) 아시아인권정보센터라는 국민도서관 설립 추진 ②-b. 수시로 (단기 체험 중심의) 국민 인권교육 마당 개설하여 인권전문활동가들의 자율적인 토론 및 국민 교육장화 추진 ③-a. 국가인권위원회 대외협력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강화 ③-b. 주요 인권정책 수립 단계에서 인권단체와의 협의 법령화 ③-c. 주요 인권정책 집행 및 평가 단계에서 인권단체의 협력과 독자성 보장 ③-d. 매년 유엔 인권관련 회의에 한국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전, 외무부 등 정부측과 민간 인권단체와의 대화 촉진을 위해 가칭 “대유엔인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④-a. 인권전문 저널 발간(영문, 한글) ④-b. 대학원 과정에서 인권전문대학원 또는 인권(교육학) 석사/박사 과정 개설 및 인권활동가 입학 할당제 도입 ⑤-a. 인권연구 및 인권교육 직제의 별도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⑤-b. 해당 직제에 인력풀을 상시 가동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 등으로 민간과 국가 영역의 연계성 강화 ⑥-a. 인권피해 구제자들을 중심을 인권서포터즈 제도 운영, 소모임 활동 지원 ⑦-a. 사영역을 포함한 인권 이해당사자 및 의무당사간의 국민적인 합의 기구 추진 ⑦-b. 인권발전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p> |
|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지평의 기반을 열겠 | ①지방자치체의 인권 증진 활동 강화 ②지방인권위원회 또는 지방 인권교육원 추진 ③언론, 방송 및 대기업의 인 | <p>①-a. 지방자치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인권보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칭 “올해의 인권도시” 선정 발표 ①-b. 지방자치체를 위한 인권증진을 위한 가이드북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술적 지원체계 확립 ①-c. 지방자치체(광역)와 인권 협약 체결 추진</p> | |

| | | | |
|----------------------------|--|--|---|
| | | 권 존중의식 제고 | <p>②-a. 지방 조례를 통한 지방인권위원회 설치 및 이 기구를 통한 지방조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검토</p> <p>②-b. 광역별 지방인권교육원을 추진하거나 지방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인권 과정 의무화</p> <p>③-a.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서의 인권 존중 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p> <p>③-b. 인권침해 및 차별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및 법적 재제 조치를 취할 근거 검토 및 연구</p> <p>③-c. 언론, 방송의 인권침해 예방과 실천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작</p> |
| 인권의 세 계화에 기여하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 | <p>①국제 발전 협력기금을 통한 국제인권 발전을 위한 공적 기여 확대</p> <p>②유엔 고등판무관실과의 실질적인 협력</p> <p>③인권 관련 국제규약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p> <p>④EU와의 인권 증진에 관한 협력 강화</p> | <p>①-a. 제3세계 인권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기금 기여 확대</p> <p>①-b. 인권활동가들과 연계한 국제인권 이슈에 대한 적절한 입장 표명의 제도화</p> <p>②-a. 유엔 고등판무관실에 인권주제관 파견제도 상설화</p> <p>②-b. 유엔내에 인권활동가 견습 또는 자원활동제도 개발 및 지원</p> <p>②-c. 국제인권 현안에 대한 외무부 등 정부 입장에 대해 인권적 검토 및 권고</p> <p>③-a.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분야 국제조약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p> <p>③-b. 민주화 이행 경험의 국제적인 이전을 위한 연구 및 추진 검토</p> <p>④-a. EU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 협의회와 우리 정부와의 정례적인 "Human Rights Dialogue" 개최</p> <p>④-b. 관련 EU 기구와 인권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p> <p>④-c. EU 단기 실무 연습을 위한 국비 장학생 파견 체계 마련</p> |
| | | | |

회의자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5차 회의

2005. 11. 2. [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업무전략기획팀 5차 회의

1. 회의 일시 : 2005. 11. 2. 10:00 ~

2. 회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회의실

3. 참석 대상

- 팀장 : 박찬운 정책국장
- 외부위원(5명) : 김종서, 조효제, 장주영, 이창수, 배경내 위원
- 내부팀원(4명) : 심상돈 과장, 사무관 이수연, 강명숙, 임송(간사)

4. 회의 안건

- 업무전략기획팀 초안 검토
- 워크샵 개최 건

붙임 : 1. 팀 초안

2. 최종 전략계획 문건 예시
3. 워크샵 개최 계획(안)

안건 1 : 팀 초안 검토

1. 팀 초안 주요 내용

- 초안 체계상의 문제(전략목표별로 세부전략 제시 vs. 기능별 기술)에 대한 절충으로, 최종문건을 2부로 나누어 기술하는 절충방식을 채택하였음.
 - 즉, 1부에서 2기 위원회의 전략목표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전략들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2부에서는 세부전략들을 기능별로 기술하는 아일랜드 방식을 채택하였음. (붙임 “최종 전략계획 문건 예시” 참조)
- 비전과 미션의 제시
 - 비전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위원회의 슬로건으로 사용해 오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주요 국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의 핵심내용-“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를 결합하여 작성
 - 미션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본질적 사명’과 인권영역의 다른 행위주체(사법 기관, NNG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화되는 성격으로부터 도출함. 다른 국가 기관과 다른 점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의 실현(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관여 등 포함)”을 NGO와 차별화되는 요소로서 “인권문제에 관한 리더쉽 발휘”를 도출하였음.
- 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제시
 - 핵심가치는 아일랜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략계획, 운영원칙은 위상강화팀의 검토결과를 참조하였음.(가치에 대한 설명은 현재 위상강화팀에서 작성 중)
- 10대 전략목표 제시
 - 전략목표를 추가하여 10개로 제시하였음.

- 세부전략은 위원회의 3가지 기능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위원회 운영 전략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위원회 발전기반 조성” 항목으로 기술하였음.
 - 이는, 위 3가지 기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위원회 전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할 필요뿐만 아니라 발전기획단 다른 2개 팀의 성과도 통합하기 위해서 임.

2. 논의 사항

- 체계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
- 비전과 사명의 내용에 대한 의견
- ‘가치’ 기술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
- 10대 전략목표 선정의 적정성 여부
- 세부 전략 검토 등

안건 2 : 워크숍 개최 계획안

붙임 자료 참조

| | |
|----------------------------------|--|
| | <p>2.1.2.3. 진정인 민족도 제고(고객민족 시스템-진정처리 인내 시스템, 진정인 민족도 조사, 진정인 고충처리 서비스 제공-개발운영, 조사관에 대한 상담 실리 및 서비스 교육 실시 등)</p> |
| 2.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 <p>2.2.1.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인권침해예방기제 도입, 인구예방 경로개계-인권 및 차별 사수, 권리통제 등-개방, 인권침해예방-인신고 기획부서설립, 법역시설, 센터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 등)</p> <p>2.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2.1. 연도별 증점 시전 예방적 활동 분야 선정공개 2.2.2.2. 인권위원회의 인권현장 방문 활성화 2.2.2.3. 인권보호를 위한 기동반 운영 <i>(어떻게 하면?)</i> <p>2.2.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3.1. 연도별로 분야별 기획조사 실시 계획을 별도 수립운영 2.2.3.2.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감경, 교정 등 분야는 관행세도 개선에 주력, 군, 다수인 보호시설 등은 인권개선 기법 조성에 주력 등) <p>2.2.4.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실무처원의 협력 강화</p> |
| 2.3.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정비 | <p>2.3.1. 차별 금지법 제정</p> <p>2.3.2.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p> <p>2.3.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디각화</p> <p>2.3.4.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p> <p>2.3.4. 차별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활용</p> |
| 3.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 실시 | <p>3.1.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3.1.2.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3.1.3.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3.1.4. 인권교육자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1.5. 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p>3.2.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1. 인권교육 과정 마련 3.2.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2.3. 교사 인권연수 프로그램 운영 3.2.4. 아동청소년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행사 지원 3.2.5. 천인권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실시 <p>3.3.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1.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3.3.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3.3. 공무원 인권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

증정 여부

3.3.4. 군인법 집행 공무원 등 우선대상의 인권교육 집중 지원

3.4. 인권의식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 3.4.1. 언론기업체·다수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 인권교육 우선대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3.4.2. 인권 전문가/단체의 인권교육 활동 지원
- 3.4.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발 지원
- 3.4.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실시 지원 ✓

3.5. 인권홍보 기능 강화

- 3.5.1. 자유권, 사회권, 차별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홍보전략 수립·실시
- 3.5.2.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위원회의 인권수호 의지, Best Practice 중심으로)

4. 위원회 발전기반 조성

4.1. 위원회의 위상 강화

- 4.1.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4.1.2. 권리구제·변별성 확보
- 4.1.3. 권고의 실효성 강화

4.2. 위원회의 역량강화

- 4.2.1.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 4.2.2. 주요 영역별 전문성·현장성 강화를 위한 통합 기능팀 운영
- 4.2.3.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 4.2.4. 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
- 4.2.5. 위원회 구성원의 학습기능 강화
- 4.2.6. 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 구축
- 4.2.7. 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계 강화
- 4.2.8. 지방사무소 확산 및 역량 강화

4.3.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정부/비정부 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

- 4.3.1. 국제인권 기구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4.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력 발휘(인권정책관련자협의회 활성화 등)
- 4.3.3.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인권기구 국제부문별 민간 인권간영과의 협력관계 진화·진행, 아시아 인권정보센터 설립, 국제협력기금을 통한 국제인권발전을 위한 공적기여 확대, 유엔 고등관무관설정 외의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강화, 국제인권이슈에 대한 적절한 입장표명, 국제인권조약 행성과정의 주도적 역할』, 위원회 제례식 준비, 인권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출판 등

4.4.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 4.4.1.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 4.4.2.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 확립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계획(2006년-2008년)

목 차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사명 및 10대 전략목표

제1장 서문

제1절 업무전략계획 작성 배경과 목적

제2절 업무전략계획 작성 과정

제3절 업무전략계획 체계

제2장 비전과 사명

제3장 가치

제4장 전략적 접근: 핵심 업무 선정기준)

제5장 핵심 업무영역

제6장 국가인권위원회의 10대 전략목표

제2부 전략적 계획

제3부 인권위원의 역할과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제 1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 사명, 전략목표

제1장 서문

제1절 업무전략계획 작성 배경과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1. 5. 24.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차별적 관행들을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낮설어 보였던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사명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업무전략계획은 이러한 전략계획의 일부로서, 향후 3년간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각 업무영역별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제2절 업무전략계획 작성과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3절 업무전략계획 체계

본 업무전략계획은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상(비전)과 그려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라는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어떤 역할(사명)을 수행하고 운영과정에서 어떤 가치(가치)에 근거하여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분야(전략목표)를 밝히고 있다.

2부는, 이들 전략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전략기획)들을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3가지 주요기능(정책권고, 조사·구제, 인권교육)별로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덧붙였다.

제2장 비전과 사명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²⁾”이다.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 사명³⁾에 헌신한다.

1.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에 관한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리더쉽을 발휘한다.

2) 위원회의 비전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슬로건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주요국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의 핵심적 내용—“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를 결합하였다.

3) 위원회의 사명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본질적 사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가기구(사법기관 등)나 혹은 NGO 등과 차별화되는 성격으로부터 도출하였다. 다른 국가기구와 다른 점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의 실현”을 그리고 NGO 등과의 차별적 성격으로부터 “인권영역에서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전문성과 리더쉽”을 상정했다.